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통계청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통계청 정원 8명(8급 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4명, 7급 4명)하며, 지방통계청의 정원 7명(7급 3명, 8급 4명)의 직급도 상향 조정(6급 7명)하는 한편,

통계청과 지방통계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각 1명씩(9급 2명)을 행정·기술 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경인지방통계청 관할의 구리사무소가 남양주시로 이전 함에 따라 남양주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5.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2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을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구리사무소”를 “남양주사무소”로 하고, 같은 란의 구리사무소의 위치란 중 “구 리 시”를 “남양주시”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을 “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90”을 “689”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1”을 “205”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7”을 “170”으로 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77”을 “69”로 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을 “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8”을 “119”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73”을 “28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01”을 “398”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82”를 “478”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8”을 “119”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8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은 2026년 7월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4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7명)은 2026년 7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명,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명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5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90	689	-1
·	·	·	
·	·	·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1	205	+ 4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167	170	+ 3
·	·	·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77	69	-8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	4	+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7	6	-1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 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8	119	+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15	14	-1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u>273</u>	<u>280</u>	+ 7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401</u>	<u>398</u>	- 3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 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482</u>	<u>478</u>	- 4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 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u>118</u>	<u>119</u>	+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5</u>	<u>14</u>	- 1